

## 의무자조활동자금 사례 - 양돈자조활동자금

# 4월 1일부터 전국 도축장에서 양돈자조금 거출 개시

편집부

의무자조활동자금 시행 태임을 '돼지'가 먼저 끊었다.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한 의무자조활동자금 거출이 4월 1일 양돈부문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전국의 도축장에서는 등급판정을 받는 모든 돼지에 대해 두당 4백원씩 농가 거출금이 징수되고 있다. 이 중 도축장에 직접 출하하지 않는 농가들의 경우 자조금 납부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현을 통해 거래 육가공업체들이나 중간상인들이 자조금을 대납토록 하고 있다.

수납기관인 도축장들은 농가들에게 거출된 자조금을 익월 20일까지 양돈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에 송금해야 하나 국세청이 '도축 의퇴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 온데다 농가가 의퇴할 경우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도축장에 영수증을 배부할 계획이어서 도축장들의 관련 부담은 해소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양돈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위원장 최영열)도 지난달 29일 공채를 통해 사무국 직원 채용과 동시에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 원활한 농가 거출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조금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양돈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는 대농가 계

도·홍보를 위해 3월 중순부터 4월초에 도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국 시, 군별 대의원, 양돈협회 도협의회장 및 지부(회)장을 중심으로 해당지역 도축장을 방문하여 징수위탁 협조를 구하는 등 범업계 차원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양돈농가 및 관련업계(도축장, 육가공업체, 식육업자 등)에 양돈자조금 거출 관련 협조를 부탁하고, 돼지콜레라예방접종확인서 서식 하단에 "내가 납부하는 자조금으로 양돈산업의 안정 및 발전을 이루어 낸다"라는 농가 계도, 홍보용 문구를 삽입하여 전국에 보급하기 위하여 전국 시, 군 축산과, 대한양돈협회 도협의회 및 지부(회), 관련 업계에 협조를 구하였다.

현재 2004년도 양돈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관리위원회 위원장단에서 검토, 보완 중에 있으며, 4월중 대의원회 승인과 농림부 승인을 받으면 본격적으로 양돈자조금사업이 시행된다.

올해는 농가 거출금 45억원과 정부 지원금 45억원을 포함해 총 90억원의 자조금이 조성될 계획이다. 이 자금은 2000년 3월 구제역 발생이후 침체된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돈육 소비확대를 위한 소비홍보, 구조적 애로를 겪는 부위별 수급 불균

형을 해소하기 위한 계도홍보, 안전하고 위생적이고 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생산자 교육, FTA 등 수입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제고, 그리고 현재 뿐만 아닌 미래를 대비하는 제도, 정책개발 등에도 사용되어 양돈산업의 안정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양돈자조금 설치 추진경과〉

<b>축산자조금법 공포</b>
↓ 공포일(2002.5.13)
<b>시행령·시행규칙 공포</b>
↓ 공포일(2002.11.14)
<b>전국 가축사육두수 조사</b>
↓ 조사기간(2003.2~7월)
<b>공동준비위원회 개최</b>
1차(5.27, 6.19)
2차(9.2)
↓ 3차(12.8)
<b>대의원선거 공고(10.13)</b>
↓ 후보자등록(10.14~20)
<b>대의원 선거(11.12~13)</b>
↓ 투표시간(6~18시)
↓ 대의원회 10일전 소집
<b>창립 대의원회 개최(12.19)</b>
↓ 대의원회 운영 규정 마련
↓ 농림부 보고, 언론 등 공표
↓ (투표후 10일 이내)
<b>관리위원회 개최(2004.1.27)</b>
↓ 수납기관 회합(2월초)
↓ 사무국 설치
<b>거출금 징수 위탁</b>
↓ 납부안내서 발부
↓ 수수료 지급
<b>농가 거출금 조성(4.1)</b>
↓ 사업계획 승인
↓ 거출금 입금
<b>자조활동자금사업 시행</b>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공포
  - 실무작업반 구성(5.27~6.10)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 양돈자조금 사업추진계획 농림부 제출(12.30)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농림부 → 축산단체
  - 농림부 발표(8.2)에 따라 양돈농가 명부 작성
- 축산단체 공동 구성·운영
  - 대의원 선거 규정 및 절차 마련
  - 선거권자, 대의원수, 선관위, 투개표소 등 확정
  - 대의원 선거 준비, 농가 계도·홍보 활동 실시
- 일간지, 농·축산신문, 축산단체 게시판
  - 선거취지, 투표일시·장소, 대의원 후보자 등록 안내
- 직접투표(연기명 비밀투표, 1인1표)
  - 대의원총수 200명중 193명의 대의원(97%) 당선
    - 양돈업자의 과반수 또는 사육두수의 2/3 이상 참여
- 의무자조금 거출여부 및 거출금액 결정
  - 거출여부 : 166명(83%) 투표, 156명(94%) 찬성
    - 대의원총수 2/3이상 투표, 투표자 2/3이상 찬성
  - 거출금액 : 400원/두 만장일치 의결
  - 대의원 중 관리위원회 위원(14인) 및 감사(2인) 위촉
- 양돈자조활동자금 조달·운용 계획 수립
  - 관리위원회 위원장(1인), 부위원장(2인) 선출
  - 관리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규정 제정
  - 양돈자조금 사업계획 및 거출금 조성체계 수립
- 수납기관 : 도축되는 전 두수 의무 징수
  - 수납기관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작업장(도축장)
    - 거출금의 구분회계, 지급절차, 납부안내서 게시 등
  - 수수료 지급 : 관리위원회 → 수납기관(거출금의 3/100이내)
- 축산업자 → 수납기관 → 축산단체
  - 사업계획 수립(관리위원회) → 승인(대의원회, 농림부)
  - 거출금 입금 : 수납기관 → 관리위원회(매달 10일)
-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사무국)

**양돈자조활동자금 수입 및 지출계획(안)**

② 정부지원금 : 농가 거출금에 대해 100% 보조  
시 45억원

**1. 양돈자조금 수입 계획**

- 대의원회에서 의무자조금 거출 여부 및 거출 금액 결정
- 수입계획 : 90억원(농가거출금 45억원 + 정부 지원금 45억원)
- ① 농가 거출금 : 출하돈 1두당 400원 거출
  - 거출금 한도 :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000분의 5 이내

**2. 양돈자조금 지출 계획**

- 사업계획 수립(관리위원회) → 사업계획 승인 (대의원회, 농림부)
- 지출계획
- 〈표 1〉 참조 C

〈표 1〉 양돈자조금 지출 계획

구분	사업내역
소비홍보	○ 양돈산물의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한 홍보 - TV·라디오·신문·잡지·지하철·버스 등 광고 - 홍보물(요리책자, 리플렛, 포스터 등) 제작 및 배부 - 소비촉진 및 소비확대를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 ○ 신제품(수출부위 중점) 개발 및 보급
교육 및 정보제공	○ 양돈농가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계도교육 : 양돈인대회, 연수회, 세미나 등 - 정보제공 : 정기 간행물, 양돈 관련 정보·사례 등 ○ 양돈관련 제반 대책 협의 및 대처방안 모색
조사연구	○ 양돈산업 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사연구 - 농가생산비·경영실태 조사, 소비시장 실태조사 등 - 양돈산업 발전방안 연구, 기술개발 및 정책연구 등 ○ 양돈산물의 품질향상 및 양돈농가의 소득증대 유도 ○ 양돈자조활동자금사업 효과분석 및 홍보
운영관리	○ 조성금액의 100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징수 수수료	○ 거출금액의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지급
예비비	